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82호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260호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3
- 인천광역시조례 제6261호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인천광역시조례 제6262호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0
- 인천광역시조례 제6263호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5
- 인천광역시조례 제6264호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21
- 인천광역시조례 제6265호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7
- 인천광역시조례 제6266호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34
- 인천광역시조례 제6267호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8
- 인천광역시조례 제6268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인천광역시조례 제6269호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 44
- 인천광역시조례 제6270호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 인천광역시조례 제6271호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50
- 인천광역시조례 제6272호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55
- 인천광역시조례 제6273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 인천광역시조례 제6274호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1
- 인천광역시조례 제6275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 인천광역시조례 제6276호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 인천광역시조례 제6277호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3124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6
- 인천광역시규칙 제3125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87
- 인천광역시규칙 제3126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1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84호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4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85호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32

조례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이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염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 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함.(제1조~제2조)
- 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마. 무더위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바.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사.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8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60 호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 다.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 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설 설치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구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현황 및 중장기 대책
2.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상황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
3. 폭염저감조치 현황 및 확충을 위한 대책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열섬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구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
2.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환경 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법적·내용적 적합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추진

주요내용

가.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 수정(제2조)

나. 조문으로 규정하여도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제3조, 제6조)

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문 수정(제9조, 제12조)

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삭제(제13~제15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61 호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업 증설”을 “컨택센터 증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기업이”를 “컨택센터에”로 한다.

4. “컨택센터 이전”이란 기업의 컨택센터를 시 관할 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설치함을 말한다.

5. “컨택센터 신설”이란 시 관할구역에 컨택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기업으로 컨택센터 관련 비영리법인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기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고 컨택센터를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에 대해 신청이 있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지원 여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전의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노동을 통하여 균형있게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규정함(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민관협의체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마. 상담 및 구제 체계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62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교육감,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4.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목표와 계획
2.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청소년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 상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관련 비영

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인천지역 경제를 선도할 지능형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능형 로봇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규정(제5조)
- 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제13조)
- 라.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제15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63 호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로봇랜드”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3. “로봇산업”이란 제1호에 의한 로봇과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법 제7조제1항의 분류체계에 의한 로봇산업을 말한다.
4.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의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로봇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 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
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
4. 로봇산업의 육성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로봇랜드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로봇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봇랜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로봇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봇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 또는 담당 부서의 장
3. 로봇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업체·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등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로봇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시장은 로봇기업의 지원 및 로봇랜드 조성 등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를 로봇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사업)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및 조사, 정책 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업
5. 로봇문화 확산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담기관이 제1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로봇기업, 로봇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간을 두고 인천지역농산물(쌀)의 생산 및 이용촉진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 지원 등 농정발전을 통한 지역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구축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제3조)
- 나. 종합대책위원회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 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관련 조사·연구에 관한사항 규정(제12조)라 생산유통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13조, 제14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64 호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품질 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에서 생산되어 단백질함량 6.5퍼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품종 혼입율 10퍼센트 이하로 유지되고 16.5도씨 이하로 저온·저장되어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위원회)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정업무담당 본부장 또는 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농정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기관·단체의 장
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고품질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고품질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자격상실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농정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보고 등) ① 위원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병충해 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고품질 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 ① 시장은 고품질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학교 급식실, 등 대규모급식시설에서 소비하는 고품질 쌀에 대하여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한 타 시·도 쌀 가격과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이유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무 규정(제4조)
- 나. 축산업 및 인천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 수립 규정(제5조)
- 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 라. 인천한우의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규정(제11조)
- 마. 한우농가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제13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65 호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하고, 인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낙농도우미”란 “낙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일시적으로 착유와 사료급여 등의 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2. “인천한우”란 “인천시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 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를 말한다.
4. “인천한우 자체씨수소”란 “당대·후대 검정을 통해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한우 수소”를 말한다.
5. “인천우량암소”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라 후대축(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 확인)의 등심 단면적 110cm² 이상, 육질등급 1++, 도체중 450kg이상, 육량등급 B이상의 후대축을 생산한 외모심사 78점 이상의 번식암소”를 말한다.
6. “인천한우농가”(이하 “한우농가”라 한다)란 “「축산법」 제22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인천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7. “인천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인천시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회, 한우 관련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8. “인천한우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품질이 균일하고 기호성이 높으며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인천시의 차별화된 한우 생산·유통·판매 시스템을 총칭하는 상징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발전, 축산 농업인의 복지 증진 도모 및 인천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발전, 축산 농업인의 복지 증진 도모 및 인천시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천한우의 개량 및 육성
2. 인천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3. 인천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항
4.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
5. 인천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
6. 인천한우의 우수혈통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단체의 구성
7. 그 밖에 축산업 육성, 농가 경영안정 및 인천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체별 역할) ①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사양관리 및 사료 일원화 등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목장 악취(냄새)제거·수질오염방지·위생적인 가축 사육 등 친환경 목장 만들기 사업

2. 젓소 사육농가 복지 향상을 위한 낙농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축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인천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
 2. 인천한우 자체씨수소 선발·육성 및 혈통 보전
 3. 인천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4.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및 적정사육두수 유지 등에 필요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5.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
 6. 조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
 7. 인천한우 가격 안정 및 브랜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 촉진 등 홍보
 8.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지원 절차 및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혈통관리) ① 시장은 인천시에서 생산·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한우개량) ① 시장은 우수혈통의 인천한우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인천한우 자체씨수소 선발·육성을 위해 당대·후대 검정 등 선발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 ④ 시장은 인천시 한우개량 체계 확립을 위해 우수한 자체씨수소의 정액을 한우농가에 우선 보급한다.
- ⑤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인천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기반 조성) 시장과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인천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1조(품질의 개선) 시장은 인천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개최) 시장은 인천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농가교육) ① 시장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업기술 센터 및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인천시 한우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 지원의 중단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이유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다.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제4조)
- 라.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
- 마. 지원대상자 정의에 관한 사항(제6조)
- 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제7조)
- 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제9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66 호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

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독립유공자 사망 시 20만원의 조의금 지급
 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4.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지원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행하여진 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청소년의 가출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가출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규정함(제6조)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함(제8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67 호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의 가능성을 안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출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
3.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4. 가출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5. 가출청소년의 교육·복지 지원
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스포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2016.8.4.)됨에 따라 인용 법률을 정비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시민프로축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여 지역 축구를 발전시키고 시민 여가 체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주요내용

-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삭제하고,“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추가(제1조)
-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부칙 제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68 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로, “높이고 지역축구발전과 시민여가체육활성화”를 “높이고, 지역축구 발전과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로 한다.

조례 제5287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이유

2018년 4월 제정된 「바둑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바둑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을 도모하려는 취지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제1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

다. 바둑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제4조)

라.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해 명시(제6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69 호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바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바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2. 바둑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 바둑지도자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4. 바둑 교육·보급에 관한 사업
5. 바둑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바둑전용 경기장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바둑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대회
2. 방과후학교 바둑교육
3. 바둑 인재의 초청 강습회
4. 그 밖에 시장이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시장이 수립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고 및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관광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 규정을 명시화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법적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수립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제4조의3항 신설)
- 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기준 기준을 규정(제6조의2 신설)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70 호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 설치기준 이외에 관광약자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장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환경의 보호와 건전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제3조, 제5조 및 제6조)
- 나.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
- 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제10조)
- 라.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1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71 호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 나. 인천광역시의회
 -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②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사용 제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제3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72 호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
4.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9. 7. 5.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장애등급 관련조항을 정비함.

주요내용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변경(제15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또는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되,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기존 이용대상자(1,2급 장애인)의 불편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이용대상자는 모두 이용대상자에 포함.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73 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장애인은 제 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인천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생활중심의 매력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골목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골목길 및 골목길재생지역, 사업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골목길재생 기본방침 수립 및 실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함.(제3조 및 제5조)

다. 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사업의 시행자를 명시함.(제4조 및 제6조)

라. 골목길재생 주민모임에 관해 명시함.(제7조)

마. 골목길재생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74 호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골목길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보전·관리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

나.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

라.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제3조(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 시장은 골목길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길재생 의의 및 목표

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길재생 시책

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 제외)

4.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군수·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군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골목길 재생지역을 결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선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기본방침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
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
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
4. 골목길주민협의체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
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
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8.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실행계획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군수·구청장에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골목길주민협의체) ①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해당 골목길재생지역의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골목길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
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
3. 골목길재생 제도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전문가 자문 및 운영
5.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
6.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 및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위임사항을 공공시설등으로 정비함. (제17조의2제1항 삭제, 제17조의3, 제17조의4)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주거지역의 일반게임제공업을 제한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어문규정 등을 반영하여 정비함.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호, 제35조제3호)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분류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42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60조제1항)

라.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고, 준주택 등은 그 비율에 따른 차등용적률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비함. (제65조제6항)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75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17조의3제2항(중전의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호에 따른 관할 시·군·구 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을 “제14호에서 “도

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17조의3제1항제3호)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한다.

제17조의3제3항(중전의 제1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기반시설”을 각각 “공공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7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기반시설 설치 특별회계의 설치)”를 “(공공시설등 특별회계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기반시설”을 각각 “공공시설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피로티구조”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외 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다목”을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다목”을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 제외)”를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35조제3호 중 “다목”을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 제외)”를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37조제2항제2호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42조제8호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48조제8호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50조제6호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51조제1호 중 “가목·바목·사목”을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8호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65조제6항 본문 중 “허가권자는 영 제85조제8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해당 용적률”을 “제1항과 제4항 및 제15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로, “허가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거복합건축물(기숙사와 주택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제1항과 제4항 및 제15항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 + $[1.5 \times (\text{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times \text{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div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승인·허가·신고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공동주택 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예방을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저감을 위한 급·배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급·배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제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76 호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소음저감을 위한 급·배수시설 설치기준)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조형물을 건립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립주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추가(제2조제3호)

나. 심의대상에 보수에 관한 사항 추가(제7조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277 호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인”을 “공공기관, 법인”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건립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인천광역시 규칙 (공 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급수공사의 신청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급수공사 사무처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감면처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제4조 및 제5조)

나. 급수공사의 시행시기를 정확히 규정함(제8조)

다. 내선 분리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처리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제9조제3항)

라. 그 밖에 급수공사 처리에 있어 민원편의를 위해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제9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4조 및 제19조)

마. 사업소장의 직권 명의변경 근거 신설(제18조)

바. 징수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정비, 누수 감면 신청을 위한 입증자료 단순화(제21조)

사. 표준급수조례를 준용하여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의 구분할 근거 마련(제23조)

아. 독촉장에 정수처분 예고문 표기로 체납 수용가 행정제재 기간 단축 근거 마련(제30조)

자. 보증금 납부대상 요건 중 부도, 화의, 법정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요구대상 목록에서 제외(제31조제2항제2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124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급수공사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직접,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2.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점용)하여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권자의 사용승락서 또는 동등 이상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기존 주택 및 준 주택에 요금 구분을 위해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대상 전체 소유권자의 동의서

제5조제1항 중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승인하지 않거나

보완 및 지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거나 지연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승인 통지를 할 때”를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하는 경우”로 “납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1. 제4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3. 수도관 및 계량기보호통(벽체 포함)을 정상적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4. 5층 이하(필로티 포함) 건축물 중 공급여건 및 지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결 급수가 불가능한 경우

④ 사업소장은 제12조에 따른 저수조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급수공사의 시행시기) 사업소장은 급수공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등이 납부되었을 때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배관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각각의 사용량 구분이 가능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 승인한다”를 “각각의 사용량 구분이 가능하도록 옥내 급수설비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조계량기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조건부 승인의 처리) ① 사업소장은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된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조건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서는 조건이행을 요구하며, 신청인이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 또는 환급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비 정액 급수공사비 적용)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급수공사에 적용한다.

1. 조례 제5조제2호의 개조공사
2.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조계량기 설치공사
3. D80mm 이상 설치 급수공사(세대 정액금 적용 급수공사 제외)

제12조제1항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로,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로, “상수도시설기준”을 “상수도설계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0세대 미만의 건축물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를 “주택과 오피스텔이 각각 50세대 미만인 건축물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존 주택 등은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일부 세대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옥내 급수설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급수설비

가 없는 경우에는 각 세대의 계량기를 제9조에 따른 별도계량기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조제1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계량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부의 대지 안에 각각의 주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급수공사비는 구경별 정액금을 적용한다.

⑤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등의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지 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의 유지·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 지하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해당 세대 외부의 벽체 또는 대지에 설치한다. 이 경우 보호통은 동파·동결·오염 등의 예방과 정확한 계측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는 구조와 형식으로 해야 한다.

4. 제9조제3항의 보조계량기 및 제3호에 따른 세대별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신청인이 설치한다.

⑤ 건축물의 구조상 세대 외부의 벽체 또는 대지에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외부의 적절한 위치에 제1항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구조와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

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소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존 급수설비를 사용하던 건축물이 멸실된 후 수도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없어 급수설비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20조제4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검침원”을 “사업소장”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서류”를 “증빙자료”로 한다.

② 사업소장이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수요가가 고장신고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 검침 정례일 10일 전까지 확인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등을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방의 개수 당 월 5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제27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권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고전이거나 예고기간중”를 “수도사용자 등의 요금 납부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고 전이거나 예고기간 중”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①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부도, 화의, 법정관리, 건축물의 공매”를 “건축물의 경매, 공매”로 한다.

제3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을 “민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제38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급수공사비 등의 적용기준(제12조의2제5항)

구분	세부내용				
1. 주 수도계량기 설치 시	구분		적용 대상	적용방법	
	구경 정액금		D15mm~50mm이하 (공동주택 제외)	구경 정액공사비 + 수수료 + 시설분담금	
	세대 정액금		공동주택(2세대 이상)	(세대 정액공사비 + 수수료 + 시설분담금) × 세대수	
			오피스텔 (50호 미만)	”	
* 실비가산 : 측량비, 점용료(도로제외), 법정수수료 등 정액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 보조계량기 : 실 공사비용 + 해당 구경 시설분담금					
2.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시	가. 전체 세대 설치 시				
	구분		세대수	설치범위	정액금
	공동주택	신축	50세대 미만	주 수도계량기 + 세대별 수도계량기	세대 정액금 × 전체 세대수
		기존	”	세대별 수도계량기	급수공사비 면제 (제12조의2 제2항)
	오피스텔, 일반주택	신축	50세대 미만	주 수도계량기 + 세대별 수도계량기	세대 정액금 × 전체 세대수
		기존	”	세대별 수도계량기	(세대 정액금×전체 세대수) - 기존구경 시설분담금
*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 세대가 “나” 항에 따라 일부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후 나머지 전체 세대가 세대별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급수공사비 면제) * 실비가산 : 측량비, 점용료(도로제외), 법정수수료 등 정액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나. 일부 세대 설치 시(기존주택)					
구분		세대수	설치범위	정액금	
공동주택, 오피스텔, 일반주택	세대별 계량기	전체 50세대 미만 중 2세대 이상	주 수도계량기 + 세대별 수도계량기	세대 정액금 × 해당 세대수	
	주 계량기	1세대	주 수도계량기	구경 정액금	
* 실비가산 : 측량비, 점용료(도로제외), 법정수수료 등 정액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종 합 민 원 신 청 서

※ 기재요령 : 굵은 선 안의 내용 중 해당사항에 ○표 하거나 관련 내용을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신청방법	서면, 전화, 구술, 팩스, 우편
------	--	------	--	-----	--	------	--------------------

수용가정보		※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도전 내역	고객번호	- - - -			업종	가구수	
	주소(소재지)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구 주소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기 존 사 용 자	성명	일반전화		토지 및 건물소유자		성명	
		이동전화					

민원신청사항		※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종류	신 청 내 용				고유식별 정보수집	구비서류 (뒷면코드참고)	관련규칙
업종변경	신업종			사유	×	-	제20조
명의변경	신사용자 (소유자)			사유	×	가, 나	제18조
급수중지	급수중지기간	년	월	일부 일	×	가	제19조
개 전	개전희망일자	년	월	일	×	다	제31조 (규정제9조)
폐 전	폐전희망일자	년	월	일	×	가	제19조
가구분할조정	신청잔가구수			신가구수	×	마, 아	제23조
계량기시험	시험희망일자	년	월	일	×	아	제24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감면	수급자가구수			수급자내역	○	라	제32조의3
중수도감면	준공년월일	년	월	일	×	바, 사	제32조의3
빗물이용 시설감면	준공년월일	년	월	일	×	바	제32조의3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상수도 민원처리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에 상기 민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 (자 필 기 재)

※ 문자서비스(민원 처리 결과, 단수 정보, 수질 정보 등) 수신 : 동의, 미동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성명(생년월일) : (서명 또는 날인) () (☎) (HP)
 신청인 성명(생년월일) : (서명 또는 날인) () (☎) (HP)
 신청인과 사용자와의 관계 : ()

인천광역시 ○○수도사업소장 귀중

[별지 제28호 서식]

보증금(보증보험증권)관리대장 (제31조제5항 관련)

수 도 전 사 항										
수도전 내역	수용가번호	검침일	시·구	동	분구	일련번호	지번	검	수전번호	
										업 종
	주소(소재지)		시 구(군) 시 구(군)	로(길) 동(읍·면)	번길 (리)	() 번지				구 경
사용자	성 명		전 화)	-	건축물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	-	-		생년월일			
보증금(보증보험증권)사항										
종 류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보증보험증권		보증사유							
납부자	성 명		전 화)	-	보 증 기 간	년 개월			
	생년월일		휴대폰	-	-	보증보험증권번호				
관 리 사 항										
설 정	보증설정일	보증만료일	보 증 금 액				결 재			
			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담당자	담 당	소 장	
연장	회 연장일자	보증만료일	연 장 사 유				담당자	담 당	소 장	
	1									
	2									
	3									
대 체 (청구)	통지일자 (청구일자)	대체일자	대 체 금 액				결 재			
			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담당자	담 당	소 장	
환 부	통지일자	환부일자	환부금액	수 령 인			결 재			
				성 명	생년월일		담당자	담 당	소 장	
보 증 금 산출기초						현장약도				

인천광역시규칙(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블라인드 채용’ 행정안전부 표준 서식을 반영하고,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연구·지도직에 가산되지 않는 자격증 정비,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응시원서 서식 변경 및 용어 정리(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나.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 다. 연구·지도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별표 5)
- 라. 운영상 미비사항에 대해 수정·보완(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125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 시험”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을 “(신규임용 시험 합격자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한다.

제9장(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다면평가

제54조(다면평가 실시) 시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다면평가 절차) ① 다면평가는 연 2회 시행하되, 상·하반기 승진인사에 앞서 사전 시행한다.

② 시장은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평가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면평가 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다면평가 방법) ① 시장은 다면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자 구성에 있어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무 유관자 중 무작위로 평가자를 선정하되,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균표준편차를 적용을 하는 등 평가결과를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다면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위와 적용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전에 평가자, 피평가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9조의2관련)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 (기계분야)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 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p>공 업</p>	<p>기계운전</p>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 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p>
	<p>조 선</p>	<p>기 술 사 : 조선</p> <p>기 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p>	
	<p>일반전기</p>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공 업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p>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p>기사자격증</p> <p>간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야 금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염색</p> <p>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일반화학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p> <p>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p> <p>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농업	일반농업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사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p> <p>농산물품질관리사</p>
	잠업	<p>기사 : 기사 : 생물공학</p> <p>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p>	
	식물검역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p> <p>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농화학	<p>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축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기사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p> <p>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p> <p>가축인공수정사</p>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p> <p>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p> <p>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p>기사 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녹지	산림자원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p>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p>	
	산림보호	<p>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p> <p>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p> <p>기능사 : 산림</p>	
	산림이용	<p>기술사 : 산림</p> <p>기사 : 산림,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p> <p>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p>	
	조경	<p>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p> <p>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p> <p>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p> <p>기능사 : 조경, 산림</p>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 산 물 검 사	산업기사 :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술사 방사선관리</p> <p>기사 : 의공</p> <p>산업기사 :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p>
환경	일반환경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가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환 경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 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수질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장기설업관리사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장기설업관리사2급</p> <p>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능 장 : 산림</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능 장 : 산림</p> <p>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 설	건 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장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장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 설 계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방송통신	디자 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통 신 사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통신기술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 기 술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p>		
시설관리	시설관리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p>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 하여 별도로 정함

2.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농촌지도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유회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공업연구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칩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칩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섬유	<p>기술사 : 섬유, 생사, 의류, 품질관리</p> <p>기능장 : 염색</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p>	
화학	화학	<p>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학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물리	물리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p>	
	농식품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작물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잡업곤충	기 술 사 : 생사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한 것만 해당한다)	
농촌지도	잡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녹지연구	임 업	<p>기술사 : 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능장 : 산림</p>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조 경	기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수산자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 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p>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앞 쪽)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뒤 쪽)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앞 쪽)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①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뒤 쪽)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5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 군	①	①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중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㉞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인천광역시규칙(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정비과제로 발굴한 조문해석 논란 용어 수정, 직종 개편(기능직 폐지) 내용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문해석 논란 해소를 위해 용어 수정(재직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 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종개편(기능직 폐지)됨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을 구분한 조항 삭제(제7조제2항)
- 다.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등 서식 변경(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 라. 기타 누락내용, 오탈자 및 띄어쓰기 등 정비(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126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계산”을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각각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자의”를 “자는”으로,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청기간내”를 “신청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상위계급”을 “상위직(계)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계급”을 “해당직(계)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를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에”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를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로,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을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퇴직수당지급”을 “명예퇴직수당 지

급”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를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을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을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을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을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를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을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를 “하되”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를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로, “부족인원”을 “부족인원의”로, “재직자”를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로, “추가심사대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을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을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재직자”를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를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을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를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④ 직급·계급·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⑥ 생년월일	
	⑤ 성명 한자	⑦ 주 소 □□□□□□	
⑧ 전화번호(지역)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선고형:)		

소속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연령정년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선고형:)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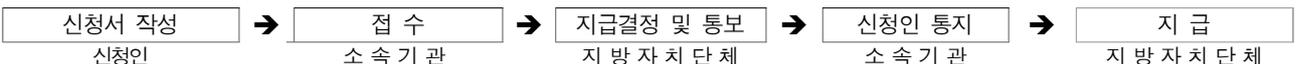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⑩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 1. 소 속:
- 2. 직 위:
- 3. 직급·계급:
-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용됩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름			
소속		공무원 구분	[] 일반직(임제 제외) [] 특정직([] 별정직	직급·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				
전화번호 (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	---	--------

확인	인사담당	(인)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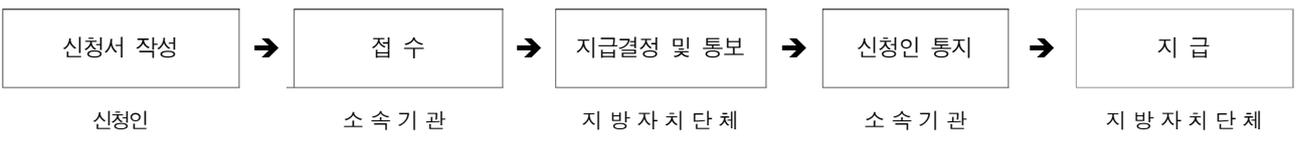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84호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2019.5.2.)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강화된 지역 배출허용기준 조례 개정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시설 개선 유도 및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배출허용기준 강화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1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8765, 이메일 iamng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하 “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종전의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배출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오염 물질	배출시설 및 적용시기	배출허용 기준
질소 산화물 (NO ₂ 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50(6)ppm이하 (2024년1월1일 이후 15(6)ppm이하 적용)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	15(6)ppm이하
	나) 신규시설	9(6)ppm이하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설비용량 100MW 이상으로서 가스터빈 포함)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15)ppm이하 23(15)ppm이하 10(15)ppm이하
	나) 신규시설	9(15)ppm이하
	2)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기존시설	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나) 신규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2) 그 밖의 발전시설	9(15)ppm이하 13(4)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ppm이하 48(12)ppm이하
	나. 신규시설	35(12)ppm이하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	48(12)ppm이하	
나.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	35(12)ppm이하	

황산화물 (SO ₂ 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40(6)ppm이하 <u>(2024년1월1일 이후 23(6)ppm이하 적용)</u>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	23(6)ppm이하
	나) 신규시설	15(6)ppm이하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미만(LNG사용시설 제외)	
	가) 기존시설	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나) 신규시설 (1) 그 밖의 발전시설(<u>바이오가스 사용시설 제외</u>)	<u>9(4)ppm이하</u>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기존시설	<u>18(12)ppm이하</u>
	나. 신규시설	<u>13(12)ppm이하</u>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u>가.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u>	<u>13(12)ppm이하</u>	
<u>나.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u>	<u>9(12)ppm이하</u>	

- 비고 1.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
3. 기존시설이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시설이 가동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한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4. 발전시설의 기체연료 사용시설 중 100MW 미만의 기존시설은 다음의 기준 농도를 적용한다.

사업장명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 <u>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u>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40(4)ppm이하
	황산화물(SO ₂ 로서)	<u>100(4)ppm이하</u>
(2) 미래엔인천에너지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u>30(4)ppm이하</u>
(3) 인천공항에너지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u>40(15)ppm이하</u>
(4) 인천종합에너지	질소산화물(NO ₂ 로서)	<u>23(15)ppm이하</u>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이하“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부칙	부칙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2016년 12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p>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하 “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종전의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u>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u>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p> <p>제3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u>2017년 5월 31일까지</u>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별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 별지와 같음 ”</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2020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p>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하 “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종전의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p> <p>제3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u>2020년 6월 30일까지</u>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별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 별지와 같음 ”</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관계 법령</p>	<p><input type="checkbox"/>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p> <p>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u>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u></p> <p>④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u>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u> 하여야 한다.</p> <p>⑥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p> <p><input type="checkbox"/>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p> <p>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해당 없음”</p>
<p>관련자료</p>	<p>“해당 없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조 현 오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85호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2021-2030)」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5조)
- 라. 물재이용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1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부.

라.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및 법 제21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물재이용 관련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물재이용 관련업

무 담당과장, 수질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질, 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물 재이용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물 재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를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련법령 검토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 제21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 제23조(재정지원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 제21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 제23조(재정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환경국 하수과장 서용성